

## 브랜드전략위원회 규정

(제정 2018. 10. 1.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효과적인 브랜드관리 및 홍보전략 수립을 위해 설치하는 브랜드전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

1. 본교의 브랜드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
2. 각종 홍보 및 자료의 제작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대학홍보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
③ 입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교내·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대외협력홍보실장은 간사가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**제4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행정지원 등)**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은 대외협력홍보실에서 담당한다.

**제7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